

2025년 기술본부 및 사장직속부서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2025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감사로서 기술본부 및 사장직속부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업무오류 및 비능률적인 요소를 시정·개선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목표 달성과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였음

2. 감사대상 및 방법

- 가. 감사대상 : 기술본부(13개팀) 및 사장직속부서(2개팀)
- 나. 감사방법 : 대면·현장 감사실시

3. 감사범위 : 2023년 10월 ~ 2025년 9월까지 추진한 업무

4. 감사중점

- 가. 불합리한 관행 및 비능률적인 업무처리의 개선
- 나. 공사·용역·물품 계약관리의 적정성
- 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
- 라. 물품 등 자산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적정성 등

5. 감사기간 및 인원

- 가. 감사기간 : 2025. 10. 13. ~ 11. 7. (기간중 20일)
- 나. 감사인원 : 기술감사팀장 외 6명

II.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표

(단위: 건, 명, 천원)

합계			시정 (금액)	주의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건수	금액	인원					계	일반	시정 완료	
23	6,410	-	3 (6,410)	7	2	1	8	7	1	2

2. 지적사항 세부내역

일련 번호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1	<p>□ 공사·용역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 부적정</p> <p>「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시에는 해당 사업장에 투입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일 경우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한 후 일할정산 하도록 되어있음</p> <p>그런데 ****팀, *****팀은 “2023년 하반기 터널 물청소 용역” 등 3건의 공사·용역의 준공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를 전부 인정하거나, 감독자가 임의방식으로 부적정하게 계산하여 정산함</p> <p>【조치요구 사항】</p> <p>→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p> <p>→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부적정한 정산으로 과다 지급된 금액 4,842,723원을 계약상대자로부터 회수조치 하기 바람【시정(회수)】</p>	주의 시정 (회수)

연번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2	<p>□ 폐기물처리비 사용실적 확인 소홀</p> <p>「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3조(정의)에 따라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로 구분하며, 같은 지침 제10조(정산) 제2항에 따라 시공자는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의 사용내역(수량 및 비용)에 대하여 준공검사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p> <p>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 중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폐기물처리비는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p> <p>그런데 **팀은 2024년 9월"무방류 순환수세식 화장실 오수정화 고도처리시설 구매설치"사업에 대한 준공시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폐기물처리비(1,000,000원)에 대한 사용실적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정산하지 않고 준공처리 하였음</p> <p>【조치요구 사항】</p> <p>→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p> <p>→ 폐기물처리비의 정산 미실시로 인해 과다 지급된 금액 1,100,000원을 계약상대자로부터 회수조치 하기 바람【시정(회수)】</p>	주의 시정 (회수)
3	<p>□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p> <p>**팀은 2025년 8월 "열차종합제어장치 대형표시판(LDP) 개량"사업 에 대한 준공검사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하면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 3,901,176원 중 안전시설비로 사용된 'PE표지판'은 사업장 경계 등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감액조정을 하지 않았음</p> <p>또한 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규정한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처리 하였음</p>	주의 시정 (회수)

연번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p>【조치요구 사항】</p> <p>→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주의】</p> <p>→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로 인해 과다 지급된 금액 467,580원을 계약상대자로 부터 회수조치 하기 바람 【시정(회수)】</p>	
4	<p>□ 건설공사 법정경비(산재·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p> <p>「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그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음</p> <p>그런데 신호팀과 통신팀은 아래 [표]와 같이 총 4건의 공사에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임에도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2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지 않았음</p> <p>【조치요구 사항】</p> <p>→ 앞으로 자체 공사발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주의】</p>	주의
5	<p>□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p> <p>「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단가(계약단가)로 하여야 하며,</p> <p>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및 「건설업 산업안</p>	통보

연번 이 항 목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p>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그 증감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여야 함</p> <p>그런데 ****팀은 “2023년 승강설비 개량공사”시 계약물량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아닌 공사 발주내역서상의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고,</p> <p>****팀은 “2025년 상반기 토목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시 계약물량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가 증가되었음에도 대상액의 증감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계상하지 않았음</p> <p>【조치요구 사항】</p> <p>→ 공사 설계변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통보】</p>	
6	<p>□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감리원배치현황 신고 감독 소홀</p> <p>「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광역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78조(과태료)에 따라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음</p> <p>그런데 **팀은 2025년 4월“열차종합제어장치 대형표시반(LDP) 개량 감리용역”을 발주·시행하면서 용역업자가 열차종합제어장치 대형표시반(LDP) 개량 사업기간 중 감리원 배치현황을 광주광역시에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으며, 2025년 8월 준공시에도 과태료 부과 등의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처리 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p>	주의 통보

연번 이권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p>【조치요구 사항】</p> <p>→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주의】</p> <p>→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용역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통보】</p>	
7	<p>□ 건축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적용기준 구체화 등 운영 개선</p> <p>**팀은 건축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공사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2019년부터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이하 “건축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이라 한다.)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p> <p>가) 단가계약과 별도 발주공사 구분기준 미비</p> <p>「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시행계획(2025.02.06.)」에서는 단가계약의 보수내용 중 승객 안전사고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이 있는 유리파손이나 셔터 고장 등 즉시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단가계약이 아닌 별도의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p> <p>그런데 건축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의 실제 운영기간 중 시행된 건축공사 발주현황을 점검한 결과, 셔터고장 등 긴급한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유지보수공사를 별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p> <p>나) 유사작업에 대한 공종조합 불일치</p> <p>연도별 보수지시와 보수완료내역서를 점검한 결과 동일·반복적 작업임에도 매년 계약상대자별로 공종조합을 다르게 적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p> <p>반복 발생하는 주요작업에 대해서는 공종조합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적정 유지보수를 유도하고 금액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p> <p>【조치요구 사항】</p> <p>→ 단가계약 적용(금액·공종·긴급도 등)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작업에 대한 공종조합의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건축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운영을 개선하기 바람 【개선】</p>	개선

도급인 이름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8	<p>□ 관리감독자 안전·보건활동 미흡</p> <p>「산업안전보건법」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보건매뉴얼」“현장 안전보건활동(현업부서)” 및 산업안전보건팀「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설명회자료(2025.06.10.)」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및 작업별 특성에 따라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활동 주요 점검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p> <p>그런데 MIS 관리감독자 안전·보건활동 실적을 점검한 결과 ****팀의 경우 시설물 보수공사 점검에 편중되어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 안전·보건활동 주요 점검항목인 안전장비 사용여부, 작업환경 점검, 화학물질 관리, 비상대피로 확인 등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p> <p>【조치요구 사항】</p> <p>→ 향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활동 수행 시 주요 점검사항들을 누락없이 점검하여 주시고,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활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통보】</p>	통보
9	<p>□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소홀</p> <p>「산업안전보건법」 제5장(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 방식, 계약기간(실제 작업기간),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公社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도급계약 사업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p> <p>그런데 **팀, ****팀, *****팀은 “평동역 실외기 이설 및 수리”등 18건의 도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수준 평가, 작업장 순회점검, 위험성 평가 등의 안전·보건조치를 누락하여 도급사업 안전관리에 소홀하였음</p>	주의

연번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p>【조치요구 사항】</p> <p>→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주의】</p>	
10	<p>□ 밀폐공간 가스측정기 검·교정 누락</p> <p>「안전보건매뉴얼」 안전보건지침서 8. 1. 1. 18.(밀폐공간 작업지침)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전교육하고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에 대하여 수시로 측정을 하여야 하며,</p> <p>‘밀폐공간 작업지침’에서는 밀폐공간 가스 측정기 센서의 유효기간 관리 기준을 산소(O₂) 센서는 2년, 일산화탄소(CO)·황화수소(H₂S)·메탄(CH₄) 센서는 2 ~ 3년 주기로 교체 또는 재교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감사결과 **팀이 보유한 복합가스측정기(MAX XT II) 2대의 최종 교정(교체)일자는 2023년 4월 24일로 확인되었으며, 2025년 11월 감사일 현재 산소(O₂) 측정센서의 유효기간(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정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p> <p>【조치요구 사항】</p> <p>→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2025. 11. 10. 유효기간이 경과한 산소(O₂) 센서에 대하여 검 교정 조치 완료하였으나,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p> <p>【통보(시정완료)】</p>	<p>통보 (시정완료)</p>
11	<p>□ 철도종사자 음주측정 관리체계 명확화 및 전산화</p> <p>가) 음주측정 시기 불명확 및 결재권자 부재 시 결재 지연 사례 발생</p> <p>감사기간 중 철도종사자 음주측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음주측정 시점이 출근 전 또는 작업 직전 등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었으며, 일부팀에서는 결재권자(분소장)가 부재한 경우 음주측정기록부를 기안만 하고 결재처리 하지 않</p>	<p>개선</p>

연계 이슈 사건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p>는 등 음주측정 확인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었음</p> <p>이는「철도안전관리규정」 제149조(음주 및 약물복용 검사시기) 에서 음주확인 시점으로 규정한 ‘업무개시 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팀 별 업무개시 시점을 다르게 해석하여 적용한 결과로서, 음주측정 시행시기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음주측정 시점이 지연되어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측정 확인시점에 즉시 결재권자가 결재토록 하고 결재권자 부재시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가 대결 할 수 있도록 음주측정 확인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p> <p>나) 음주측정 기록부 및 점검부 효율적 관리 . 보존 한계</p> <p>현재 음주측정기록부는 전자결재(스마트문서)로 관리되고 있으나 점검이력이 누적관리 되지 않으며, 음주측정기 점검부는 여전히 수기 작성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점검이력의 효율적 검색 및 보존에 한계가 있음</p> <p>【조치요구 사항】</p> <p>→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이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데 그치지 않고 측정 결과가 실제로 효율적으로 관리.점검될 수 있도록 음주측정 시기 및 음주측정기록 결재절차를 명확히 하시기 바라며, 음주측정기록부 및 음주측정기 점검부를 MIS시스템 內 전산화하기 바람 【개선】</p>	
12	<p>□ 고정·재고자산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미흡</p> <p>가) 2024년 고정자산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미흡</p> <p>****팀 등 4개팀에서는 [표 1] “고정자산 물품수급관리계획 미흡사례”와 같이 2024년 고정자산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지 않고 계획에 없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획에 없는 물품을 미리 구매한 후 연도말 12월에 이르러서야 수급관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물품관리내규」에서 정하는 물품수급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p> <p>나) 재고자산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소홀</p> <p>또한 **팀 등 기술본부 8개팀의 2024년도 재고자산 수급현황에 대한 점검결과 [표 2] “계획품목 대비 수급품목 연계율”과 같이 재고자산 품목에 대해 수</p>	통보

연계 이행 이행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p>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계획품목에 대한 연말 수급실적 연계율이 평균 30.21%에 불과하였음</p> <p>이와 같이 고정·재고자산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이 미흡한 것은 물품의 발주 결재과정에서 물품총괄관리부서 물품출납담당자의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각 부서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이 관행적으로 처리되고, 각 팀별 분임물품출납담당자 변경시 인계인수 미흡과 분임물품출납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부족에 원인이 있음</p> <p>【조치요구 사항】</p> <p>→ 향후 「물품관리내규」를 준수하여 고정·재고자산 수급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물품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통보】</p>	
13	<p>□ 승강설비 점검보수용역 정산금액 검토 및 이력관리 미흡</p> <p>****팀이 작성한 승강설비 용역 기성금액 검토보고서와 통합경영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승강기 고장수리일지를 비교검토 한 결과, 2024년 1월 남광주역 승강기 3호기 승객감힘 고장 출동시간 초과 1건의 경우 과업내용서에서 규정하는 용역품질 수준 미달에 해당함에도 기성금액 검토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p> <p>또한 2024년 1월 금남로5가역 승강기2호기 승객감힘 고장 3건의 경우 기성금액 검토보고서에는 반영은 되었으나, 통합경영정보시스템 승강기 고장수리일지에는 누락하는 등 승강기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음</p> <p>【조치요구 사항】</p> <p>→ 승강설비 점검보수 용역 시행에 따른 기성시 승강기 고장수리일지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시고, 고장수리일지 기록이 잘못 기입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통보】</p>	통보

연월일 사건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14	<p>□ 발전설비공사 하자기간 설정 미흡</p> <p>「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기공사의 경우「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르도록 되어있음</p> <p>따라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전기공사는 발전설비공사에 해당하므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였어야 함.</p> <p>그런데 *****팀은 2024년 본사 및 소태역 환승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설비 관급자재 구매”건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였으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발전설비공사가 아닌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로 오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였음</p> <p>【조치요구 사항】</p> <p>→ 향후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시 적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 하자관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통보】</p>	통보
15	<p>□ 유연근무제 근태관리 미흡</p> <p>가) 시차출퇴근제와 근무시간선택제도의 혼용 운영</p> <p>감사기간 중 기술본부 소속팀 직원들의 유연근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부서에서는 시차출퇴근제와 근무시간선택제의 구분을 혼동하여 잘못 적용하거나 반대로 적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p> <p>나) 근무시간선택제 운영시간 미준수</p> <p>또한 근무시간선택제는 1주일 이상 단위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일부 직원이 3 ~ 4일 등 주 5일 미만의 단기(주 5일미만) 운영을 하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였음</p>	통보

연계 이슈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p>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태관리 주관부서인 **팀에서는 이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연근무제의 운영취지가 훼손되고 근무시간 관리의 일관성 및 공정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p> <p>【조치요구 사항】</p> <p>→ 유연근무제도의 시차출퇴근제와 근무시간선택제의 구분 및 운영기준을 전 직원에게 재공지하고, 기준에 따라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통보】</p>	
16	<p>□ 근태관리[보상휴가(1)] 운영방식 전산화</p> <p>「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광주교통공사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시 발생하는 시간외 근로를 보상하기 위해 보상휴가(1)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p> <p>그런데 감사기간 중 기술본부 소속팀 직원들의 보상휴가(1)의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상휴가(1)은 4시간 단위 또는 최대 8시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나, 1시간, 2시간30분, 3시간 등 사용단위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또한 보상휴가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용기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 적치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음</p> <p>이와같은 미준수 사례는 현재 각 부서에서 보상휴가(1) 사용을 위해 '대체근무(휴무) 상황부(복무관리지침 별지1 서식)'를 수기로 작성·관리하고 있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수기관리시 근무시간 계산, 결재 및 기록관리 과정에서 비효율과 오류 가능성이 존재하였음</p> <p>보상휴가(1)은 근로자의 정당한 휴식권 보장과 시간외 근로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보상휴가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태관리 방식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p> <p>【조치요구 사항】</p> <p>→ 2호선 경영정보시스템 내 근무·휴가 관리 자동화 기능(적치·사용·소멸 포함)을 구축하고 보상휴가(1) 대체근무 상황부 서식을 전산화하여 자동 계산 및 전자결재 기능을 반영하기 바람【권고】</p>	권고

연번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17	<p>□ 행사운영비용 일상감사 누락</p> <p>「감사규정 시행내규」 제20조(일상감사의 범위) 관련 [별표 2]에 따라 “매 건당 1,000,000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와 행사운영비용(회의비 등)의 지출”은 일상감사의 범위에 포함되며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 감사부서에 그 업무의 적법성 ·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일상감사를 회부하여야 함</p> <p>그런데 ****팀은 아래 [표]와 같이 1,000,000원을 초과하는 행사운영비 지출사업인“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물품 구매(훈련조끼)”와“IoT헬멧(신체부착형) 구매” 등 2건에 대하여 일상감사에 회부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였음</p> <p>【조치요구 사항】</p> <p>→ 향후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일상감사가 누락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주의】</p>	주의
18	<p>□ 승강설비 점검보수용역 수행시 안전관리 소홀</p> <p>「승강설비 점검보수용역 과업내용서」 I 일반사항 제15조(안전관리) 및 II특기사항 제15조(안전관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인적, 물적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점검 및 보수 작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간이펜스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음</p> <p>또한 계약상대자는 점검 보수 용역원이 안전보호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절연장갑 등)를 착용 후 점검 및 보수에 임하도록 상시 교육하여야 하고, 특히 용역원이 카 상부에서 작업 또는 점검 시에는 반드시 안전벨트와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음</p> <p>그런데 감사기간 중 역사 현장점검(2025.10.22.) 결과 송정공원역 대합실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승강설비 점검보수용역의 보수작업 중 작업장에 간이펜스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도구를 승객이 통행하는 장애인유도타일 위에 방치하는 등 승객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또한 작업현장임에도 현장대리인과 용역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p>	현지조치

연번 항목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사항	처분사항
	<p>않았을 뿐만아니라 엘리베이터 카 상부에 작업하는 용역원은 안전벨트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보수작업을 수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적발하였음</p> <p>【조치요구 사항】 → 위 지적내용과 관련하여 감사기간 내 승강설비 점검보수용역의 관리감독자 및 용역원 전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였음【현지조치】</p>	
19	<p>□ 하자검사 결과 전산입력 누락</p> <p>「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조치 관리지침(2023.09.15.)」에 따르면 공사를 시행하는 주관부서는 년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만료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하자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검사결과를 통합경영정보시스템(MIS)에 전산입력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팀과 ****팀은 [표] "통합경영정보 하자대장 입력 누락 현황"과 같이 감사기간 현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났음에도 해당공사에 대한 정기 하자검사 및 만료검사 결과를 통합경영정보시스템(MIS) 하자대장에 전산입력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음</p> <p>【조치요구 사항】 → 위 지적내용과 관련하여 감사기간 내 통합경영정보시스템 하자대장에 누락된 하자검사결과 내용을 입력하였음【현지조치】</p>	현지조치